

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공고

‘창업하기 좋은 도시’ 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24년 05월
성남산업진흥원 원장

1 센터개요

【 킨스타워 】

< 성남창업센터(정글ON)/킨스타워 소개 >

창업이라는 “정글” 속에서 밝은 빛으로 성공의 길을 제시하는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,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열린 기회와 교류를 통한 성장의 공간

구 분	개방형 킨스타워 19층, 21층	독립형 킨스타워 20층
설립일	2017. 2월	2017. 12월
위치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, 19~21층 (킨스타워, 정자동) ※ 정자역 3,4번 출구 바로 앞	
면적 (전용)	1,045m ² (약 315평)	700m ² (약 210평)
공간구성 (보육규모)	· 입주공간 102석(4, 6인석) · 회의실 3개, 라운지, 강의장, 교육장, 휴게공간	· 입주공간 13개 호실(6, 10, 12, 14인실) · 회의실 4개, 세미나실, 휴게공간
이용시간	월 ~ 금(09시 ~ 21시)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	365일 24시간
센터전경		
		

2

모집개요

□ 모집대상 및 규모

센터명	모집대상	유 형	규 모
킨스타워	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	12인실(독립형)	1개사

*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, 제조시설 입주불가

**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

□ 모집기간 : ~ 2024. 6. 10(월), 오전 11시 까지

※ 유의사항

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1일 이전에 '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'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. 마감시간 30분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구 분	신청자격	비 고
창업기업 (개인/법인)	▶ (공고일 기준) 창업 7년 이내 기업 *예비창업자 신청 불가 - 개인기업 : 사업자등록증명상 '개업연월일' 기준 - 법인기업 : 법인등기부등본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 ▶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」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(기업) ※ 별첨 참조
지 원 "제외"대상	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▶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(기업) ▶ 성남창업센터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센터 졸업 이력이 있는 기업 ※ 중기부 지침 (중기부 지정 BI센터 확인) https://www.smes.go.kr/binet/incu/center/list.do ▶ 숙박업, 임대업, 유흥업,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	

□ 입주요건

구 분	내 용								
입주기간	<table><tr><th>센터명</th><th>입주기간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킨스타워</td><td>2024. 7. 1 ~ 2024. 12. 31-(6개월)</td><td>중도퇴소 계약승계</td></tr></table>			센터명	입주기간	비고	킨스타워	2024. 7. 1 ~ 2024. 12. 31-(6개월)	중도퇴소 계약승계
	센터명	입주기간	비고						
	킨스타워	2024. 7. 1 ~ 2024. 12. 31-(6개월)	중도퇴소 계약승계						
※ 계약 승계로 인해 12월 말 계약 종료 입주 연장평가 후, 평가 결과에 따라 1회(1년) 연장 가능 ※ 진흥원 운영 창업센터(정글ON) 입주 총량 최대 3년, 입주성과(투자, 고용 등) 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1년 연장 가능									
입주비	<table><tr><th>센터명</th><th>입주관리비(보증금)</th><th>멤버십비(사용료)</th></tr><tr><td>킨스타워 (독립형)</td><td>좌석당 30만원</td><td>좌석당 10만원/월</td></tr></table>			센터명	입주관리비(보증금)	멤버십비(사용료)	킨스타워 (독립형)	좌석당 30만원	좌석당 10만원/월
	센터명	입주관리비(보증금)	멤버십비(사용료)						
	킨스타워 (독립형)	좌석당 30만원	좌석당 10만원/월						
※ 입주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함 ※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전체 비용을 일시불로 전액 현금 납부 • 예시 (킨스타워 독립형/12인실) - 입주관리비 : 30만원 × 12인 = 360만원 (이행보증보험 발행) - 멤버십비 : 10만원 × 12인 × 6개월 = 720만원 (현금납부)									
기 타	○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(별도 배포 예정) 준수 의무 • 입주 및 지원 : 입주 선정평가, 입주기간 및 연장, 입주승인 취소 등 • 행위제한 및 퇴소 • 시설물 관리,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 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성남창업센터를 본사로 사업자등록 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(좌석)의 근무인원 확보								

4

선정절차 및 방법

- 서류평가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- 발표평가 :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(대면)평가
- 평가기준 : 창업자 및 팀 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성장전략 등
- 결과통보 : (선정, 미선정팀) 개별 통보
- 접수 및 선정절차

구 분	시 기	내 용
공 고	'24. 5월 5주 ~ '24. 6월 2주	· 진흥원 홈페이지 등
접 수	공고일 ~ '24. 6. 10, 11시	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서류평가 일정	~ '24. 6월 3주차	· 이메일 결과 안내
발표평가 일정	'24. 6월 4주차	· PT형식 발표평가 진행
최종 선정기업 안내	'24. 6월 4주차	· 이메일 결과안내(선정미선정)
상호대차 계약체결	'24. 6월 말 *입주 '24. 7월	· 최종 선정기업 계약체결

* 단,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,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

- ☐ **서류평가**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- ☐ **발표평가** :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(대면)평가
- ☐ **평가기준** : 창업자 및 팀 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성장전략 등
- ☐ **결과통보** : (선정, 미선정팀) 개별 통보
- ☐ **가점사항**

① 벤처기업인증 획득기업 (5점) *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

② TIPS, 투자유치 등 실적 우수 기업

- 중기부 TIPS 선정 기업 (7점)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1억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5점) * 보증·용자 제외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3천만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3점) * 보증·용자 제외

* 중복 가점 불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만 인정

** 증빙(인증 확인서, 선정 공문, 협약서, 투자계약서 등) 미제출시 미인정

*** 서류평가시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 반영(서류평가 생략시 발표평가에 반영)

5
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☐ **접수마감** : ~ 2024. 6. 10(월), 오전 11:00 까지
- ☐ **접수방법** :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□ 제출서류

제출 서류(업로드)		법인기업	개인기업	예비창업자	
				창업경험有	창업경험無
①	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(지정양식)	○	○	○	
②	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	○	○	×	
③	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○	×	×	
④	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內)	○	○	○ (개인 납세 증명)	
⑤	4대 보험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○	○	×	
⑥ 사실증명*	가. 사업자등록사실여부	×	×	×	○
	나. 총사업자등록내역	○	○	○	×
⑦	가점사항(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)	○	○	×	
⑧	인증, 지식재산권 증빙서류(보유시)	○	○	○	

【 발급경로 안내 】

- 사업자등록증명원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: (인터넷등기소) <http://www.iros.go.kr/>
-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
 - 국 세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 - 지방세 : (정부24) <https://www.gov.kr>
-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 <https://www.4insure.or.kr>
- 사실증명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 / 신청·제출·신청업무-사실증명신청
 -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, 기간 설정없이 발급

*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, 허위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시 유의사항

- 하단 표의 “제출서류” 중 ① ~ ⑧ 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생성
- 파일명 = “기업명”으로 설정
- ※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

□ 문 의 처 : 성남산업진흥원 스타트업지원부

구 분		담당자	연 락 처
킨스타워	모집·선정	허정원 과장	☎ 031-782-3041
	시설·공간	강수현 주임	☎ 031-782-3274

【별첨】 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	상세 구분			창업여부	해당기업명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	창업아님	
		이종	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	
폐업 3년 까지			창업아님		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	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	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	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	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	
			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	
	이종		창 업		
기타	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			창업아님	
<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>					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					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					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					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					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					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					